

서울특별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곽향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445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1월 31일

발 의 자: 곽향기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성연, 박영한,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서준오,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아이수루,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종복, 이경숙,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성배, 이영실, 이용균, 이종배, 이종태, 이효원, 이희원, 장태용,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허·훈, 홍국표, 황유정 의원(61명)

1. 제안이유

- 스마트 기기를 보유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증가 및 비대면 생활 확장으로 인한 무인단말기의 보편화 등 노인의 스마트 기기 이용이 생활화되고 있음.
- 이에 노인에게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하여 노인의 디지털 사용 소외를 해소하고 일생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나. 노인 스마트 기기 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다. 노인 스마트 기기 교육에 관한 사업 시행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노인 스마트 기기 교육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노인 스마트 기기 교육에 관한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함(안 제7)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정보화 사회 적응을 돕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스마트 기기”란 기능이 제한되지 않아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부분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제품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무인 정보 단말기 등의 디지털 기기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노인 스마트 기기 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한 자치구 협력 체계 방안
5. 그 밖에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에 관한 교육·홍보·안내·지원 등에 관한 사업
2.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비영리 법인 및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관련 비영리 법인 및 기관·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 인구의 스마트 기기 보급률, 활용 능력, 교육현황 등에 대한 연구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

양 행정기관, 자치구,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3011100000004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곽향기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선동규 주무관

접수일 : 2023.01.11.

회신일 : 2023.01.17.

내용문의 : 02-2180-7953

서울특별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제7조(실태조사)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 관련 비용발생
- ※ 같은 조례안 제4조(노인 스마트 기기 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제8조(협력 체계 구축) 규정은 관련 사업 진행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 ※ 같은 조례안 제5조(사업), 제6조(지원) 규정은 관련 부서 확인 결과 소관 부서가 정해지지 않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비용 추계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 서울특별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제7조(실태조사) 규정에 따른 비용

나. 추계의 전제

- 안 제7조의 실태조사는 안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비용은 2024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4~2028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결과

- 총비용(합계) = 75,000천원(연평균 15,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4	2025	2026	2027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안 제7조)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소계(b)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 총 비용(b-a)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라. 비용추계 상세내역

○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실태조사 용역 비용 ≒ 75,000천원

- 산출방식 = $\sum_{i=1}^5 (\text{실태조사 용역비})_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

- 실태조사 용역 비용 = 75,000천원

= (연간 실태조사 용역비) × (5년)

= 15,000천원 × 5회

※ 참조 : 2022년 시민공익활동 실태조사 용역 15,000천원

= 75,000천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무관 선동규

☎ 02-2180-7953

e-mail : abasiclife@seoul.go.kr